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0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동물 전시기준 규정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게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휴식·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동물 전시기준 규정 등

개정안은 판매를 위한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휴식·수면과 위생·건강 관리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¹⁾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⑤ · ⑥ (생략)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판매를 위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01조(과태료) ① -----

1) 「동물보호법」 제78조에서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u>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영업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영업시설에 대한 허가·등록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²⁾하고 있으나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의 ‘전시’ 행위를 전제로 한 별도의 관리기준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영업장에서 투명 유리상자 등 최소한의 운동·휴식도 어려운 열악한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판매 단계

- 2)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에서 보유동물의 사육·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시환경에 특화된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판매 대상 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78조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미 영업자에게 동물의 안전·위생적 사육·관리 의무와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시행규칙을 통해 사육설비의 크기, 위생관리, 관리인력 배치 등 사육·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이러한 기존 규율체계 하에서 판매 단계의 전시환경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그 수준을 어느 범위까지 강화할 것인지는, 전시행위

3) “두 뺨 유리창 속 반려동물… 펫숍 서식 공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일보, 2021.12.18.

4)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에 대한 복지 기준의 필요성과 함께 영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통해 영업자에게 동물의 안전·위생적 사육·관리 의무와 시설·인력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⁵⁾, 판매 단계에서의 전시환경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그 수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5

5) 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물병원과 적절한 연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독립공간* 확보, 급식 및 배수시설 설치 등 시설·인력 기준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육설비(가로×세로×높이) :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준수사항) 반입 동물에 대한 체온의 걱정 여부, 기생충 및 피부병 존재 여부,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 확인, (시설·인력 기준) 채광 및 환기, 온도·습도 조절,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 사육설비 크기, 동물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등

참고 1

동물 판매업자 준수사항(시설 및 인력기준)

□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동물보호법 제69조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공통 기준>	
영업장 건물 구조	영업장은 ①독립된 건물이거나 ②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뉘어진 경우를 말함)
채광 및 환기, 온도와 습도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급수·배수 시설 및 바닥 재질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함
방충·소독 관련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 실시
화재안전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개별 기준 : 동물판매업>	
사육설비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 확보 (1) <u>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u> (2) <u>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u>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사육·관리 인력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
격리실에 관한 기준	(격리실)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 (2)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 (3)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